| 대표작성기관 |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| 이상호 | ☎02-2164-1404 |
|---|---|---|---|
| v1(신규) | 2021.08.23 | | |
| v2(개정) | | | |

# 표 준 검 사 기 준 서

| 물품분류번호 | 품명 | 세부품명번호 | 세부품명 | 작성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52141604 | 신발건조기 | 5214160401 | ①신발건조기 | v1(2021.08.23) |

## ①신발건조기(5214160401)

## 1. 검사항목

| 검사기준 / 검사항목 | 검사 수준 및 시료 수량 | | 표준소요일수*** |
|---|---|---|---|
| | 검사수준* | 시료수량** | |
| 관능검사 | 특별검사 S-2, AQL 2.5 | n= | 1 |
| 이화학시험 | 발췌검사 | n=1 | 14 |

* 검사수준: 품명별 검사특성을 고려하여 설정(KS Q ISO 2859-1, KS인증심사기준 등 참고)하였으며, 검사 건에 따라 검사수준을 조정할 수 있음
** 시료수량: 검사의 신뢰성 및 검사 소요일수를 고려하여 설정
*** 표준소요일수: 이화학시험 항목 중 가장 장기적인 시험 소요일수 기재

## 2. 관능검사

| 검사항목 | 품 질 기 준 | 검사방법 | 결함정도 |
|---|---|---|---|
| 수량 | 납품요구서 | 육안검사 | - |
| 겉모양 및 구조 | 흠, 찌그러짐 등 해로운 결함이 없을 것 | 규격서 | 경결함 |
| 표시사항 | 제품 표시 사항이 규격서와 일치할 것 (품명/모델명/정격전압/제조업체/제조년월/연락처 등) | 규격서 | - |
| 관련인증 | 법적 및 해당 규격서에 따른 품질 인증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표기되어 있을 것 (예: KC인증, 전자파적합등록, CC인증 등) | 규격서 | 중결함 |

## 3. 이화학시험

| 시험항목* | | 품질기준** | 시험방법 | 결함정도 | 검사여부 | 생략근거 | 소요일수***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조(치수)**** | | - | 규격서 | 경결함 | ○ | | 1 |
| 살균능력 | | 규격서 | 규격서 | 중결함 | × | 성적서대체(14일 초과) | 30 |
| 탈취능력 | | | | | | | |
| 금속 | 물성시험 | KS D 3536<br>KS D 3698<br>KS D 3705<br>등 | KS D 3536<br>KS D 3698<br>KS D 3705<br>등 | 중결함 | ○ | | 14 |
| | 화학시험 | | | | | | |
| 전기부(안전인증 제품 제외) | 절연저항 | KS C IEC 60335-1 | KS C IEC 60335-1 | 치명결함 | ○ | ㉠ 참조 | 7 |
| | 내전압 | | | | | | |
| | 누설전류 | | | | | | |

* 구매규격서의 항목은 포함하고, 필요 시 관련 법령, 관련 표준 등에 따른 추가항목 선정

** ①검사는 규격서에 따른다. 다만, 한국산업표준(KS) 및 단체표준 등에 미달된 기준이 규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격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표준(KS) 및 단체표준 등의 관련 기준을 규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②규격서에 상기 이외 다른 한국산업표준(KS) 및 단체표준 등의 재질이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한국산업표준(KS) 및 단체표준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.

③규격서 관련 표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표준의 내용(시행일, 적용례)에 따라 개정된 표준을 개정이전의 표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***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 3조의2의 제1항에 따른 시험항목 생략할 수 있음. (시험기간 14일 초과하는 시험항목, 검사비용·시험수수료의 총합 500만원 초과 시 중요성이 덜한 항목 순으로 일부항목, 법정의무인증 취득 당시 시험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 결과도 대체할 수 있음.)

**** 채취된 시료를 정상적인 이화학시험 과정에 따라 진행할 경우 소요일수(업무부하 고려하지 않음)

***** 치수는 검사요청장소에서 검사원이 현장 실시한다.

### ㉠ 법정의무인증에 대한 검사생략 적용기준

①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2의 제3항에 따른 면제.

② 법정의무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,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의 해당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을 경우, 대체 불가 하며, 시험을 진행하여야 함.

③ 해당 모델이 파생모델이며, 기본모델에서 시험하여 대체·생략한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, 기본모델의 시험성적서도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

## 4. 안내사항

1) 이화학시험항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일 이전에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.

2) 결함정도는 '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표준미달 시 처리기준'에 따라 불합격 시의 결함정도를 표시합니다.

- 단, 위 처리기준이 없을 시에는 유사 품명규격 적용.

3) 계약서에 허용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.

4) 수치 맺음법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KS Q 5002 "데이터의 통계적 기술"에 따릅니다.
5) 검사 시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 ㉮시방서, ㉯공인성적서, ㉰인증서, ㉱교정시험성적서, ㉲기타
6) 분할검사, 중간(자재)검사 또는 불합격 등에 따른 재검사 경우에는 검사수수료가 증가합니다.
7) 조달물자 건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 18조에 따라 재검사의 경우는 재검사 요청 전 보수, 개조 또는 선별 계획서 제출 필요(단, 보수, 개조 또는 선별 납품하여도 품질면에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.)
8) 납기일 경과 시는 지체상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